

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□ 대상투자신탁 :

펀드명	약관 변경	설명서 변경
PCA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 I-1 호	0	
PCA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유러피언 리더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 I-1 호	0	
PCA 유러피언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 I-1호	0	0
PCA 글로벌 기초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퇴직연금 글로벌 리더스 40 혼합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코리아 국공채 채권모투자신탁 제 I-1 호	0	
PCA 아시안 리더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 P-1 호	0	
PCA 아시안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 P-1 호	0	0
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자투자신탁 제 A-1 호	0	0
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자투자신탁 제 A-2호	0	0
PCA 이머징 아시아 주식자투자신탁 제 H-1 호	0	0
PCA 일본대표기업 주식모투자신탁 제 I-1 호	0	
PCA 일본대표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 I-1호	0	0
PCA 일본대표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 I-2호	0	0
PCA 일본대표기업 채권혼합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코리아 인컴 채권모투자신탁 제 I-1호	0	
PCA 중국 주식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인도 주식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친디아 주식자투자신탁 제 I-1 호	0	0
PCA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주식투자신탁 제 A-1 호	0	0
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파생상품자투자신탁 제 A-1 호	0	0
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파생상품자투자신탁 제 A-2호	0	0
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 I-3호	0	0



당0	川	사	유	: 약관	<u></u> 및	설명	서 t	변경							
_	1) 2)	환[- 리 ^트 개수	투자 E 수료	부과	기준	변경	병			준시2 조항	난 변경 변경			
변	경	시	행	일: 20	008년	년 12월	릴 1	9일							
וכ			타	: 변경	를 후	약관	및	설명	서는	첨부	파일을	· 참조해	주시기	바랍니	l다.